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6-92호

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 및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3호(2010. 5.20)로 정비구역 지정·고시되고, 강북구고시 제2012-142호(2012.7.27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및 강북구고시 제2012-183호(2012. 9.28)로 정비구역변경(정정)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83호(2013.4.19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3-327(2013.12.20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5-308호(2015.12.11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, 강북구고시 제2016-81(2016. 5.13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(☎901-6822)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5월 27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: 강북구 미아동 791-364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: 59,465㎡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: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명우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(사무소)
 -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7길 132 4층(미아동 317-19, 광문빌딩)
 - (☎ 986-2427)
-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
- 사.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: 2016년 5월 27일

아. 변경내용 및 사유

- 시행기간(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): 60개월 → 90개월
 - 향후 계획(이주, 착공, 공사기간)상 절대공기 부족
- 도시계획시설(도로)
 - 사업시행인가 시 내용에서 누락 및 착오에 따른 사항 정정
- 임대주택건설 변경: 174세대 → 153세대
 -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(17%→15%)
[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48(2015. 5.28)]
- 자금계획 변경: 231,799.600백만원 → 332,014.807백만원
 -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변경, 분양 후 미 분양자에 대한 보상비 증가, 손실보상금액 책정에 따른 증가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가산금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추정액임.